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의 경우
보도자가 보도의 진실에 관하여 중대한 의심을 가졌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ST. AMANT v. THOMPSON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에 대한 사건이송 명령

<사실개요>

상소인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정치적 연설을 하면서 그동안 그가 어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앨빈(Albin)이란 사람에게 내놓은 질문에 그에 대한 앨빈의 답변을 읽었다. 그 답변은 공무원인 피상소인이 형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는 허위의 내용이었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여 공판재판관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인용받았다. 그 공판재판관은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년)을 고려하여 그 심리 후 새로운 심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간상소재판소는 상소인이 뉴욕타임즈 사건의 원칙에서의 개념 안에서 현실적 악의로 즉, 상소인의 진술이 거짓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에 의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사실심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주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간상소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즉, 상소인이 피상소인의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개인적 지식이 없었고, 앨빈의 진실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앨빈의 선언진술서만을 근거로 하였고, 그 사실을 알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증명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진술이 명예훼손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고려하지 아니 하였으며, 단지 앨빈을 인용한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오신하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사건의 의미 안에서 본다면 피고가 그의 보도의 진실에 관하여 중대한 의심을 가졌다고 결론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다.

(a)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부주의한 행위는 통상의 분별있는 사람이라면 그 진술을 보도하였거나, 그 보도 전에 조사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b) 공직자들의 행위에 있어서 공중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커서 진실을 위한 방어나 통상의 주의정도만으로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을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c) 자신이 선의로 행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증언은, 그 쟁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위환경에 비추어서 사실조사원은, 그 보도가 과연 선의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d) 이 사건에 있어서 상소인이 피상소인에 관한 그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고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충분치 아니하다. 파기하여 환송. 러셀 J. 스코네카즈(Russell J. Schonekas)가 상소인을 위하여 이유를 밝히고, 서면을 제출하였다.

로버트 L. 클라인피터(Robert L. Cleinpeter)가 피상소인을 위하여 이유를 밝히고, 서면을 제출하였다.

<판결요지>

화이트(White) 판사가 법원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은 공직자에 의하여 제기된 명예훼손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러한 소송에서 원고가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현실적 악의, 즉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그 허위 여부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의 원칙을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이 정당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376 U. S. 279-280).

1962년 6월 27일 상소인인 공직에의 입후보자인 세인트 아맨트(St. Amant)는 루이지애나주의 베이톤 루우지(Baton Rouge)시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과정에서 세인트 아맨트는 트럭운전 기사들의 지방노동조합의 조합원인 J. D. 앨빈(J. D. Albin)에게 그가 제시한 일련의 질문들과 그에 대한 앨빈의 답변들을 읽었다. 그 질문과 답변에서 주장된 바에 의하면, 지방 노동조합의 우두머리인 E. G. 파틴(E. G. Partin)의 극악한 행동과, 파틴과 세인트 아맨트 사이의 정치적 적대자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앨빈의 답변 중 하나는 파틴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기록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제한 그의 노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답변에서 앨빈은 동 베이톤 루우지시 교구의 부보안관인 허먼 A. 톰슨(Herman. A. Thompson)이란 사람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이제 우리는 그날 밤 이 금고가 옮겨질 예정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본부로 에드(Ed)를 만나러 갔던 허먼 톰슨(Herman Thompson)을 통하여 관련된 보안관사무실과 에드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에드로부터 톰슨에게 건네진 돈에 대하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주기마경찰 부관 조우 그린 (Joe Green)과의 관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보안관 사무실이나 주경찰서와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며, 그것은 시경찰로서는 관할 밖의 일입니다.」

톰슨은, 즉시 그 방송이 커다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외우는 것이고, 가장 극악한 성질의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즉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은 상기의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에 앞서 심리되었다. 공판재판관은 톰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5천불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그 뒤 새로운 심리를 위한 신청을 받아들이고 기각하는 과정에서 그 법원은 그 후에 내려진 뉴욕타임즈 사건의 원칙을 고찰하면서 그 원칙은 이미 내려진 판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루이지애나주 항소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세인트 아맨트가 뉴욕타임즈 사건이 요구하는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였다. 루이지애나주 최고법원은 그 중간상소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로는 세인트

아맨트가 톰슨에 대한 진술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건이송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루이지애나주 법원들의 세인트 아맨트에 의하여 방송된 기사가 톰슨이 형사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사실, 그 비난은 허위인 사실, 그리고 톰슨은 공직자인 사실, 그리하여 톰슨에 대한 그 허위기사가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의하여 개념 지워진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톰슨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본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이나 사실심재판소의 견해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뉴욕타임즈 사건의 악의의 기준을 적용할 의도하에서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은 세인트 아맨트가 톰슨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악의는 없었으나 부주의에 의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결론을 내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세인트 아맨트는 톰슨의 활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는 기록에 의하면 앨빈의 진실성에 대한 평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앨빈의 증언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는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 노동조합측의 사람들과 같이 그 정보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그는 그 진술이 톰슨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한 아무런 숙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결론으로 나아갔으며, 그는 오직 앨빈의 진술을 인용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방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만으로는 세인트 아맨트의 톰슨에 대한 진술의 진실성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부주의에 의한 무시」는 사실 하나의 확실한 정의로 개념지우기는 불가능하다. 그 기준이 헌법, 법률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주어졌든 간에 구체적 사건을 판결하기 위한 다른 수많은 법률 기준의 경우와도 같이, 그 개념의 한계는 경우에 따른 판결을 통하여 결정될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건들은 부주의에 의한 보도에 관하여 좀더 명확한 정의를 위한 의미있는 선례 역할을 하였다.

앞에서 본 뉴욕타임즈 사건에 있어서 그 기록상 공표자가 허위 기사를 공표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선고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Garrison v. Louisiana 379 U. S. 64 1964 년)에 있어서의 판시는 「허위 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인식」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보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커터스 출판사 대 버츠 사건(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53 1967 년)에 있어서 하알란(Harlan) 판사의 견해는 「공표자가 허위 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직자에 의하여 계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고의적인 허위보도 또는 부주의한 보도인 점에 관한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부주의한 행동이란 통상의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공표하였을 것이라든지 그 공표 전에 조사하였을 것 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거기에는 피고가 그의 보도에 관하여 사실상 중대한 의심을 가졌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공표했다는 점이 진위 여부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가 무지에 대하여 이득을 준다거나 무책임한 공표자를 기사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조장한다거나, 피고가 선의로 그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기사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증언에 의하여 쟁점을 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분명히 부주의에 의한 무시기준은 공표자들이 통상인이나 분별는 공표자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에서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즈 사건과 그 뒤의 사건은 공직자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실을 위한 방어나 통상적 주의의 기준은 어느 것이나 자발적 통제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정헌법 제 1 조의 취지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창조하고 있다. 거짓말이나 허위의 보도는 어느 것이나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이 아니고, 아무도 그것들이 바람직하다거나 보다 더 조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 업무에 관한 진실의 보장이나 보도의 확실성을 위하여는 수정헌법 제 1 조가 진실한 보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 및 우리 사건들이 허위의 보도 중 보호받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하였던 기준을 고수한다.

그러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그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였다고 하는 증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사실조사원은 그 보도가 과연 선의로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이야기가 피고에 의하여 꾸며진 것이거나, 그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거나, 전적으로 사실 여부가 안 밝혀진 익명의 전화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선의로 보도하였다는 주장은 아마도 설득력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의 진술이 너무나 그럴 듯하지 않아서 경솔한 사람만이 그 기사를 보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주의함은 정보제보자의 진실성 또는 그의 정보의 정확성을 의심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부주의에 의한 무시인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 하지 않아도 세인트 아맨트의 방송은 공직자에 관한 부주의한 보도였다. 루이지애나주 법원들에 의하여 인용된 어느 것도 앨빈의 톰슨에 대한 진술의 허위가능성을 세인트 아맨트가 알고 있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조사를 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악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287-288) 참조]. 세인트 아맨트에게 자신의 법률적 책임의 가능성에 대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의 측에 있어서 의심을 가졌다는 증거로는 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이 방송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실패한 사실과 따라서 톰슨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관하여 부주의했다는 사실도 그와 비슷하게 별다른 중요성이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앨빈의 신뢰성에 관한 고려이다. 그러나 주법원이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기록상 앨빈의 진실성의 평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이 단지 앨빈의 신뢰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나 세인트 아맨트의 그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주장하기 위한 톰슨의 입증의 실패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사실들은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인트 아맨트는 1962 년 6 월에 그 방송을 하였다. 그는 소수파 트럭운전자 집단의 회원들과 처음 만난 1961 년 10 월부터 앨빈을 알았다. 세인트 아맨트는 증언하기를 그는 앨빈의 정보 중 기타의 다른 사실은 진실임을 증명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서진술서도 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앨빈은 처음에는 문서로, 나중에는 기자들 앞에서 그의 답변이 진실임을 맹세하였다. 앨빈에 의하면 그는 그 비난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세인트 아맨트는 앨빈이 노동조합의 내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 세인트 아맨트에게는 앨빈이 그 분쟁의 세밀한 내막을 대중에게 방송시킴으로써 자신을 개인적 위협에 빠지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주법원은, 공무원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고찰되어야 할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사건을 우리의 견해와 불일치되지 않도록 좀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한다.

블랙(Black) 판사와 더글라스(Douglas) 판사는 그들이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 및 개리스 대 루이지애나 사건에서 개별의견(결론은 같이나 이유가 다른 의견)으로 확립한 바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판결에 동조한다.

<포터스(Fortas) 판사의 반대의견>

나는 상소인이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에서 유형화된 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믿지 않는다. 상소인이 방송한 선서진술서에는 피상소인을 향한 극도의 명예훼손적 진술이 담겨져 있었다. 피상소인은 공무원이었다. 그는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 상소인의 적이 아니었다. 상소인의 즉흥적이고 경솔하며 무감각한 명예훼손은 어떤 선거운동의 과열로 인한 결과나 마찬가지로 합리화될 수 없다. 뉴욕타임즈 사건하에 있어서 이 명예훼손은 상소인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즉 그 기사가 사실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로 방송되었다. 사건으로서 커터스 발행회사 대 버츠 사건의 원칙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는데 지표가 된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활에 대한, 더 나아가 공직자들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침해와 그들의 이해관계 및 감정에 관한 무분별함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 수정 헌법 제 1 조는 그의 행동이 무분별하고, 무모하거나 사려 깊은지의 적부에 관계 없이 인격말살자에 대한 피난처가 아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우리가 아무때라도 공무원에 대하여 무차별 공격을 하여도 좋다는 특권을 준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공직에 있다고 해서 인간의 자격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공직자는 엄밀한 조사와 자유롭고도 공개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불필요하고 무분별하며 허위의 사실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때 그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뉴욕타임즈 사건은 이러한 최소한의 문화생활 기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상소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상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 성실한 조사를 하였다면 나는 그 기사가 허위라도 그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그들의 평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이러한 정도의 비난은 감수하여야 하러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뉴요타임즈 원칙이 손해배상을 명함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나는 원심판결을 유지한다.